

### Ⅲ-8 생활이 곤란할 때

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시구청촌사무소 복지담당창구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. (부록Ⅸ-1)

#### (1) 민생·아동위원

생활이 어려운 분, 혼자 사는 노인, 노환으로 누워있는 노인, 편부모가족, 장애를 가지고있는 분 등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이외에 복지사무소나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에 협력합니다. 또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.

#### (2) 생활보호

사용할 수 있는 자산 (재산) 이나 자신의 능력, 기타 제도 혹은 시책들을 이용하고, 또한 친족한테서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거주지의 복지사무소의 보호과로 상담하여 주십시오. 생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.

#### (3) 생활자금의 대부

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복지자금이나 긴급원조자금을 대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